



제 42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신성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721호)

2025.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총괄적 검토	4
가. 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입법 취지	4
나. 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7
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	12
2. 총칙(제1장)	15
3.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안 제2장)	23
4. 위치정보의 보호(안 제3장)	58
5.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안 제4장)	80
6. 위치정보의 이용기반 조성 등(안 제5장)	82
7. 벌칙(제7장)	8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신성범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1. 22.

다. 회 부 일 : 2025. 1.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기술 발전과 ICT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위치정보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과 융합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구분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사업자의 지위를 구분하여 차등 규제하는 등 해당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의 위치정보 산업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위치정보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진흥을 위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의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소규모 사업자도 직접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술적·산업적 환경 변화로 이러한 구분은 의미가 크지 않게 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치정보법을 전부 개정하여 사업자가 위치정보 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권리 침해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의 진흥과 이용자 권리 보호를 균형있게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치정보산업 진흥 관련 규정 마련(안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38조제1항·제2항)

1) 위치정보산업에 진흥을 법의 목적에 추가하고 위치정보산업을 새롭게 정의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 및 위치정보산업에 진흥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

2)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 근거를 마련함.

나.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의 구분을 폐지하고 위치정보로 일원화함(안 제2조 등).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개념을 구분을 하던 것을 위치정보로 일원화함.

다. 위치정보사업의 일원화(안 제2조 등)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개편하여 현실에 맞게 위치정보사업의 개념으로 통합함.

라. 위치정보사업자 일원화 및 규제 완화(안 제5조 및 제7조)

기존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구분하여 차등규제해

온 것을 위치정보사업자로 통합하고, 진입규제도 신고제로 일원화하며 사업의 양수 및 합병 등의 경우에도 위치정보와 위치기반서비스에 따라 인가·신고제로 구분하여 운영하던 것을 신고로 일원화함.

마.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규정 마련(안 제11조제2항)

사업을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업 신고 기간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자, 휴업·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 및 위치정보사업을 폐업한 자에 대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시 표시·통지로 규제 완화(안 제18조제2항)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위치정보사업자가 아닌 제3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시 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동의를 받아야 했던 것을 특정 방식으로 표시·통지하는 것으로 가능하게 함.

사. 수탁자에 대한 업무위탁(안 제22조)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위치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수탁자가 준수할 필요가 있는 의무 규정을 신설함.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가. 개정안의 발의 배경 및 개정 취지

-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사람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말함¹⁾.
- 위치정보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정보자원이자 이용자에게 편리한 위치기반서비스(LBS; Location-Based Services)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현대 사회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측위 및 위치정보의 활용, 융·복합기술의 발전과 혁신에 따라 우리나라의 LBS 시장 매출액 규모는 2019년 1조 5,918억원에서 2021년 2조 6,279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²⁾.
- 동시에 개인의 위치정보는 개인의 주요 활동반경이나 이동방향, 취미나 관심사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 사생활과 직결되며, 오·남용 시 인격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큼.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測位)된 것을 말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2022.6.

- 이에 위치정보의 유출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5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총 12차례의 개정을 거침.
- 그런데 최근 위치정보 기술 및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위치정보법을 비롯한 관련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치정보산업 진흥을 위해 위치정보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따르면,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과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서비스를 공급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어, 현행 위치정보법과 같이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엄격히 구분하고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여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³⁾.
- 또한 위치정보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54.2%가 매출액 10억원 미만, 70.8%가 종사자 50명 미만으로 소규모 사업자가 대다수임을 고려할 때⁴⁾, 현행법상 규제가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음.

3) ‘방통위, 위치정보 스타트업 목소리 듣고 청년기업의 꿈 본격지원’, 2024.2.21.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4) 한국인터넷진흥원, ‘위치정보 산업 동향 보고서’, 2024년 3월호

- 이에 개정안은 위치정보에 관한 사업자 지위를 일원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법을 전부개정함으로써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위치정보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나. 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총 7개 장 5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안의 체계는 다음과 같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체계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과 위치정보산업의 진흥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한 제22조(업무위탁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제한) 제23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제24조(위치정보의 파기 등)
제2장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제5조(위치정보사업의 신고) 제6조(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제7조(소상공인 등의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9조(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등) 제10조(이용약관의 공개 등) 제11조(사업의 폐지·정지 등) 제12조(위치정보서비스의 정지·삭제 등) 제13조(과징금의 부과 등)	제3절 위치정보주체 등의 권리 제25조(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제26조(법정대리인의 권리) 제27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제28조(손해배상) 제29조(분쟁의 조정 등)
제3장 위치정보의 보호 제1절 통칙 제14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제15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제16조(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 제17조(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제18조(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제19조(위치정보사업자등의 위치정보 제공 등) 제20조(위치정보 등의 수집·이용·제공의 제한 등) 제21조(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4장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제30조(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 제31조(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제32조(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 제33조(비용의 감면) 제34조(통계자료의 제출 등) 제35조(위치정보산업 실태조사) 제5장 위치정보의 이용기반 조성 등 제3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제37조(표준화의 추진) 제38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 등) 제39조(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제6장 보칙 제4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41조(시정조치 등) 제42조(청문)

제4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조(위치정보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7장 벌칙	제5조(위치정보사업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벌칙)	제6조(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6조(벌칙)	제7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 조치)
제47조(벌칙)	제8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양벌규정)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폐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49조(과태료)	제10조(위치정보 동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적용제외)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행정처분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 현행 위치정보법과 비교할 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법의 목적으로 추가하고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둘째, 현행법상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를 ‘위치정보’로 통합하는 대신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둠.
- 셋째, 현행법상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치정보사업’으로 통합하여 사업자 지위를 일원화하는 대신 사물위치기반 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둠.
- 넷째, 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하향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함.

- 다섯째,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직권 신고말소를 도입하는 등 일부 규제를 신설함.

<현행법과 개정안의 체계 비교>

현행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과 위치정보산업의 진흥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제2장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제5조(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제5조(위치정보사업의 신고)
제5조의2(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6조(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제6조(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제9조의2(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7조(소상공인 등의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제7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10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등)	제9조(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등)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폐업 등)	
제12조(이용약관의 공개 등)	제10조(이용약관의 공개 등)
제13조(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정지 등)	제11조(사업의 폐지·정지 등)
-	제12조(위치정보서비스의 정지·삭제 등)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제13조(과징금의 부과 등)
제3장 위치정보의 보호 제1절 통칙	제3장 위치정보의 보호 제1절 통칙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제14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제15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현행	개정안
제17조(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	제16조(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
제17조의2(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제17조(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제2절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제18조(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제20조(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제19조(위치정보사업자등의 위치정보 제공 등)
제21조(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제공의 제한 등)	제20조(위치정보 등의 수집·이용·제공의 제한 등)
제21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
-	제21조(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	제22조(업무위탁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제한)
제22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제23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제23조(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제24조(위치정보의 파기 등)
제3절 개인위치정보주체 등의 권리	제3절 위치정보주체 등의 권리
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제25조(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제25조(법정대리인의 권리)	제26조(법정대리인의 권리)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제27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제27조(손해배상)	제28조(손해배상)
제28조(분쟁의 조정 등)	제29조(분쟁의 조정 등)
제4장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제4장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제30조(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
제30조(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제31조(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제30조의2(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	제32조(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
제31조(비용의 감면)	제33조(비용의 감면)
제32조(통계자료의 제출 등)	제34조(통계자료의 제출 등)
-	제35조(위치정보산업 실태조사)
제5장 위치정보의 이용기반 조성 등	제5장 위치정보의 이용기반 조성 등
제33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제3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제34조(표준화의 추진)	제37조(표준화의 추진)
제35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제38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 등)
제35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제39조(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현 행	개 정 안
제5장의2 보칙	제6장 보칙
제36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4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36조의2(시정조치 등)	제41조(시정조치 등)
제37조(청문)	제42조(청문)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의3(준용 규정)	-
제6장 벌칙	제7장 벌칙
제39조~제41조(벌칙)	제45조~제47조(벌칙)
제42조(양벌규정)	제48조(양벌규정)
제43조(과태료)	제49조(과태료)
-	제50조(적용 제외)

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 및 관계부처·이해관계자 의견

- 위치정보산업의 성장성,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위치정보에 관한 사업자 지위를 일원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전부개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사항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사업자 규제 완화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보호가 약화될 우려는 없는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 현행법상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 물적 시설,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임원 및 종업원의 자격에도 제한을 두는 등 다른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에 비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음. 이는 유출 시 사생활 침해 등 국민의 권익 침해 위험이 큰 개인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취지임.
- 개정안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가 산업에 진입함으로써 개인위치정보 유출과 이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일부 사업자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가령 현재 개인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경우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실태점검 대상에 포함됨.
- 이에 따라 신규 규제 도입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어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우려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셋째, 개정안에 따른 사업자 통합 규정이 수범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위치정보산업 발전에 따라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 점차 통합 제공되고 있기는 하나, 두 사업의 대상 및 내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는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제공 등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한 규정도 있음.
- 개정안은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통합함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을 수행하는 자만이 이행할 수 있는 규정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만을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등 수범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임.
- 위의 사항을 포함한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이하 개별조문 검토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함.

- 개정안에 대한 유관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산업 진입규제 개선 및 규제 합리화를 통해 위치정보산업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관련 정책 및 집행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또한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를 통합할 실익이 불분명하고, 사물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와 동등한 수준으로 규제할 경우 과중한 규제로서 오히려 관련 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2. 총칙(제1장)

가. 정의(안 제2조)

(1) 개정안 요지

- “위치정보”, “위치정보주체”, “위치정보사업” 등을 정의함.
- 현행법상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구분되던 위치정보를 “위치정보”로 통합함.
- 현행법상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와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로 통합함.
- 현행법상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치정보사업”으로 통합함.

현행	개정안
- <u>위치정보</u> 및 <u>개인위치정보</u> - <u>개인위치정보주체</u> - <u>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u> 및 <u>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u> - <u>위치정보사업</u> 및 <u>위치기반서비스사업</u>	- <u>위치정보</u> - <u>위치정보주체</u> - <u>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u> - <u>위치정보사업</u> - <u>위치정보산업</u>

(2) 개정안 조문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사람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測位)된 것을 말한다.
2. “위치정보주체”란 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
3.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란 위치정보주체(수집대상자), 수집일시·방법·경로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는 제외한다),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제공 서비스명, 이용·제공 일시 및 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위치정보사업”이란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위치정보산업”이란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기기·제품·소프트웨어를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6. “위치정보시스템”이란 위치정보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저장·분석·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검토사항

□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를 ‘위치정보’로 통합

- 현행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를 특정 개인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와 개인이 아닌 사물의 위치만을 식별할 수 있는 “사물위치정보”로 구분하고, 각각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음⁵⁾.
- 구체적으로 ①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사업을 운영하는 자와 사물위치정보에 관한 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관리 수준을 달리하고, ② 개인위치정보주체(개인위치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인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를 통합하여 ‘위치정보’로 통합하여 관리하되, 개정안 제50조(적용제외) 제1항을 통해 사물위치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치정보주체에 대한 고지, 위치정보 보호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 다만 현행법에서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를 구분한 것은 ① 개인위치정보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관리 및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 ② 사물위치정보의 경우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測位)된 것을 말한다.
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위치정보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아 개인위치정보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임.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를 통합하여 규정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보호가 약화됨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 등이 없는지, 사물위치정보에 대한 실태조사 등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위치정보 활용·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물위치정보 활용·규제를 일원화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 구분을 폐지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보호가 약화되고 사물위치정보의 활용은 감소하여 위치정보산업 진출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치정보사업’으로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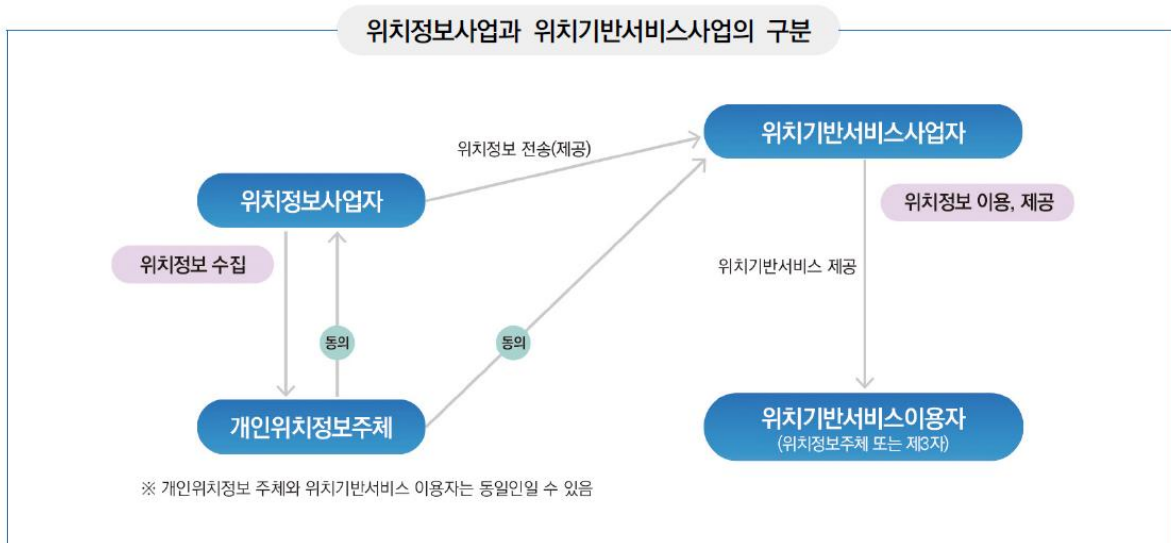
○ 현행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에 관한 사업을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으로 구분하고, 양자에 대한 관리 수준을 달리하고 있음.

- 현행법상 ‘위치정보사업’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함⁶⁾.
- 위치정보사업은 통신망 및 위치측위서버와 같은 특정 설비를 통해 통신단말기의 기지국 정보나 신호, 거리 등을 측정·변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미 수집 또는 제작된 위치정보를 단순히 전달받아 서비스 제공에 이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과 구분됨.
 - 가령, 통신기지국 정보를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이동통신 사업자는 현행법상 위치정보사업자이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 사업자는 현행법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임.
- 개정안은 현행법상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위치정보사업자’로 통합하여 규정하되, 개정안 제50조(적용제외) 제2항을 통해 사물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의무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위치정보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7.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이하 “위치기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2022.6.)

○ 다만, 현행법에서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구분하여 규정한 것은 양자의 사업 성격과 요구되는 자격 등이 상이하여 서로 다른 관리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개정안을 통해 양자를 하나의 체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가령 현행 위치정보법 제9조의2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소상공인 등이 신고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⁷⁾,

이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에 비해 위치

7) 제9조의2(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한다)으로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을 개시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본 것임.

- 또한 현행 위치정보법 제29조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⁸⁾, 해당 업무는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하여야 하는 특성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아닌 위치정보사업자만이 수행할 수 있음.
- 개정안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과도하게 완화하거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 강화할 우려가 있음.
- 또한,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대등한 위치에

8)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경찰관서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이하 “목격자”라 한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목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하 “구조받을 사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실종아동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

놓음으로써 위치기반서비스사업만을 수행하는 자 또한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등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업무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위치정보사업의 일원화에 따라 기존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의 규제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다만 통합의 타당성과 별개로, 이하의 검토 내용은 개정안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각각 통합함을 전제로 논의함.

3.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안 제2장)

가.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및 임원·종업원의 결격사유(안 제5조 및 제6조)

(1) 개정안 요지

-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안 제5조 제1항 및 제3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검토(변경신고의 경우 검토사항을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으로 한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제5항).
- 위치정보사업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함(제6항).
- 다음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치정보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고, 위치정보 접근권한자로 지정될 수 없음(안 제6조 제1항).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제1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제2호)
- 이 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파법(이하 “이 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3호)
- 이 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4호)
- 이 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5호)
- 제11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사업 폐지명령·신고사항의 말소 이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인인 경우 그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그 대표자)(제6호)

-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고, 접근권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때에는 접근권자의 지정은 효력을 잃음(제2항).

(2) 개정안 조문

개 정 안
제5조(위치정보사업의 신고) ①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4.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②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신고사항의 말소 이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그 변경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제3호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

개 정 안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신고, 제3항·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치정보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 접근권한자(이하 이 조에서 “접근권한자”라 한다)로 지정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신고사항의 말소 이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법인인 때에는 사업폐지명령 또는 신고사항 말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그 대표자를 말한다.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고, 접근권한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개 정 안

사람임이 밝혀진 때에는 접근권한자의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 또는 접근권한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종업원이 상실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3) 검토사항

- 현행법은 위치정보에 관한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사물위치정보사업자, 개인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사물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①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물적 시설,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을 갖추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② 사물위치정보사업자와 ③ 개인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④ 사물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이나 신고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 개정안은 이들을 '위치정보사업자'로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이들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되,
안 제50조 제2항을 통해 기존의 사물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등록·신고 의무를 배제하려는 것임.
-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 통합되어가는 산업 현황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사업자의 지위를 일원화하고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함으로써 위치정보산업을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개인위치정보 사업자	- 방송통신위원회에 <u>등록</u> : 상호, 소재지, 사업 종류·내용, 사업용 주요 설비 - <u>등록 요건 법률에 명시</u> : 물적 시설,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 <u>임원·종업원의 결격사유</u>	- 방송통신위원회에 <u>신고</u> : 상호, 소재지, 사업 종류·내용, 사업용 주요 설비 - <u>신고 요건 별도 규정 없음</u> (단, 폐지명령·신고말소 이후 1년 미경과 사업자는 신고 불가)
사물위치정보 사업자	- 방송통신위원회에 <u>신고</u> : 상호, 소재지, 사업 종류·내용, 사업용 주요 설비 - <u>신고 요건 별도 규정 없음</u> (단, 폐지명령 이후 1년 미경과 사업자는 신고 불가) - <u>임원·종업원의 결격사유</u>	- <u>신고 후 1년 이내 사업 개시</u> -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에 대한 신고 특례(1개월) - <u>임원·종업원의 결격사유</u>
개인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	- 방송통신위원회에 <u>신고</u> : 상호, 소재지, 사업 종류·내용, 사업용 주요 설비 - <u>신고 요건 별도 규정 없음</u> (단, 폐지명령 이후 1년 미경과 사업자는 신고 불가) -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에 대한 신고 특례(1개월) - <u>종업원의 결격사유</u>	
사물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	- <u>관련 규정 없음</u> - <u>종업원의 결격사유</u>	- <u>개정안 제50조 제2항에 따라</u> 신고의무 미적용 - <u>임원·종업원의 결격사유</u>

○ 다만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개인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필요성 및 적절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에서 네 종류의 사업자에 대해 서로 다른 수준의 관리체계를 둔 것은 ① 특정 개인의 위치를 식별하는 개인위치정보의 경우 개인 사생활과 무관한 사물위치정보에 비해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고,
②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경우 위치정보를 대량으로 수집·보유·제공하는 위치정보사업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의 규제가 적절하다고 본 것임.
- 그런데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물적 시설,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실질적 심사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제공하려는 자가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충분히 판단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한편, 개인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경우 현행법에서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위치정보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를 적용받게 되어 개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둘째, 신고 수리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5조 제5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 내용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거쳐 사업자 자격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그런데 개정안에는 안 제5조 제2항에서 폐지명령·신고사항의 말소 이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 외에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실질적인 요건을 규정하는 조문이 없어 ‘이 법에 적합’한 경우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움.
- 따라서 신고 수리에 실질적 심사가 필요하다면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설비 등 요건, 사업자 결격사유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개정안의 영업개시 규정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5조 제6항은 위치정보사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개정안의 위치정보사업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신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수리가 있어야만 비로소 사업 개시가 가능한바,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행법에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개시를 등록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보호가 약화되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안 제5조 제3항에서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변경신고 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 영위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변화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유로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자가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변경신고 반복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9) 참고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5조 제1항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고 있음.

제25조(사업의 개시 및 휴업 신고) 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나. 소상공인등에 대한 특례(안 제7조)

(1) 개정안 요지

-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으로서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소상공인등”)는 안 제5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할 수 있음.

다만 사업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위치정보 사업을 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안 제6조 제1항 및 제3항).

- 안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을 시작한 자가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안 제5조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신고하여야 함(제4항).

- 소상공인등이 안 제6조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 보완신고를 한 경우 안 제5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 봄(제5항).

현 행	개 정 안
-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이 <u>(개인)위치 기반서비스사업</u>을 하려는 경우 1개월간 신고 없이 사업 가능 - 1개월 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하려는	-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이 <u>위치정보 사업</u>을 하려는 경우 1개월간 신고 없이 사업 가능 - 1개월 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하려는

현 행	개 정 안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2) 개정안 조문

개 정 안
제7조(소상공인 등의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한다)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②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신고사항의 말소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개 정 안

-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을 시작한 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자가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소상공인등이 제1항 단서,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제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로 본다.

(3) 검토사항

- 현행 위치정보법 제9조의2는 소상공인등으로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하려는 자는 1개월간 개인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⁰⁾.
- 이는 스타트업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사업 경쟁력 및 수익성 등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 없이

10) 제9조의2(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한다)으로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을 개시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및 내용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개시한 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자가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일정 기간 시범서비스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임.

- 그런데 개정안이 현행법상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치정보사업’으로 통합하여 규정함에 따라,

개정안 제6조에 따르면 현행법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뿐만 아니라 위치정보사업자 또한 신고 없이 1개월간 사업을 할 수 있게 됨.

- 현행법이 위치정보사업이 아닌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해서만 특례를 둔 것은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경우 위치정보사업에 비해 요구되는 시설·설비가 비교적 적으면서도 다양한 응용서비스 개발·제공이 가능하여 소상공인등의 진입가능성이 높고,
② 위치정보사업의 경우 유출 시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큰 개인의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한다는 점에서 신고 없이 사업을 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부작용이 클 우려가 있기 때문임.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현행법상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등의 특례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안 제7조 제3항에서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변경신고 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 영위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변화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유로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자가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변경

신고 반복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휴업·폐업 등(안 제8조 및 제9조)

(1) 개정안 요지

- 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이 있는 경우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분할 후 존속되는 법인(이하 “양수인 등”)은 양수·상속·합병·분할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안 제8조 제1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제2항).
- 신고를 한 양수인, 상속인,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피상속인, 합병·분할 전 법인의 위치정보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제3항).
- 위치정보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하려는 경우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9조 제1항·제2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제5항).
- 위치정보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 신고가 수리된 경우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휴업·폐업하려는 사업의 범위 등을

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과 동시에
위치정보 등을 파기하여야 함(제4항).

(2) 개정안 조문

개 정 안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이 있는 경우(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수·상속·합병·분할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피상속인 또는 합병·분할 전의 법인의 위치정보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기간과 휴업 사실의 통보계획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폐업사실의 통보계획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치정보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 휴업하려는 날 또는 폐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개 정 안

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휴업: 휴업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범위 및 휴업기간

2. 제2항에 따른 폐업: 폐업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범위 및 폐업일자

④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폐업하는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소상공인등(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은 휴업 또는 폐업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휴업: 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하는 사업의 위치정보로 한정한다)

2. 제2항에 따른 폐업: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사업의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치정보사업의 휴업 및 폐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현행법은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이 있는 경우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는 경우 ①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승인)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② 사물위치정보사업자와 ③ 개인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④ 사물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개정안은 이들을 모두 ‘위치정보사업자’로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개인위치정보 사업자	- 방송통신위원회의 <u>인가(승인)</u> - (양수 및 법인의 합병·분할) 인가 심사 요건 법률에 명시 :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등 - (휴업) 휴업기간 1년 초과 불가	- 방송통신위원회에 <u>신고</u> - (휴업) 휴업기간 1년 초과 불가
사물위치정보 사업자	- 방송통신위원회에 <u>신고</u> - (휴업) 휴업기간 1년 초과 불가	
개인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	- 방송통신위원회에 <u>신고</u> - (휴업) 휴업기간 1년 초과 불가	
사물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	- <u>관련 규정 없음</u>	- <u>개정안 제50조 제2항에 따라</u> 신고의무 미적용

-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앞서 사업자 신고와 마찬가지로 개정안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바, 그 필요성 및 적절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사업자 신고와 마찬가지로 양수, 상속 등의 신고 수리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8조 제2항 및 제9조 제5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양수,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 및 휴업·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고 내용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거쳐 양수, 상속 등을 승인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양수, 상속 등의 신고 수리의 실질적인 요건을 규정하는 조문이 없어 ‘이 법에 적합한 경우’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신고 수리의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라. 사업의 폐지·정지 등(안 제11조)

(1) 개정안 요지

-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단,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함(안 제11조 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신고 또는 양수·상속·합병·분할 신고를 한 때(제1호)
- 위치정보의 수집 설비 또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 때(제2호)
-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의 정지·폐지를 요청한 때(제3호)

-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음(제2항).

-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때(제1호)
- 휴업기간이 지난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때(제2호)
- 휴업·폐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위치정보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위치정보사업을 폐업한 때(제3호)

-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자의 사업 개시 여부 또는 폐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제3항).

현 행	개 정 안
- 위치정보사업자등의 <u>등록·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정지 명령</u>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인가·신고 ② 부가된 등록조건 미이행 ③ 휴업기간 후 사업 미개시 ④ 휴업·폐업 승인·신고 없이 사업 미시행 ⑤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 불가 ⑥ 타 법에 따른 등록취소·사업정지 요청 <u><신 설></u>	- 위치정보사업자등의 <u>사업의 폐지·정지 명령</u>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②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 불가 ③ 타 법에 따른 사업정지·폐지 요청 -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u>직권 신고말소</u> ① 신고 후 1년 이내 사업 미개시 ② 휴업기간 후 사업 미개시 ③ 휴업·폐업 승인·신고 없이 사업 미시행 - 직권 신고말소 전 <u>사업자의 사업 개시 여부 또는 폐업 사실 확인 의무</u>

(2) 개정안 조문

개 정 안
제11조(사업의 폐지·정지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단서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때

개 정 안

2. 위치정보의 수집 관련 설비 또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 때
 3.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요청한 때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때
 2. 제9조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이 지난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때
 3.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지 아니하거나 위치정보사업을 폐업한 때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말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사업자의 사업 개시 여부 또는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제3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11조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사업 유지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의 폐지 또는 전부·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것임.
- 개정안이 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신고로 일원화함에 따라 현행법상 등록·인가의 취소에 대한 규정은 삭제되었으며, 현행법과 달리 사업의 폐지명령보다 강화된 조치인 직권 신고말소를

추가로 규정함.

-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에 따라 일부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바, 제재조치 간 형평에 부합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휴업기간이 지난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자와, 휴업·폐업신고 없이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사업의 폐지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위치정보법 시행령은 1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3개월, 2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사업폐지를 명하도록 하고 있음¹¹⁾.
- 반면 개정안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의 정지명령 없이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도록 함으로써 제재를

11) 제14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4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사업자 구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2.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이 지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때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개인위치정보 사업자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사물위치정보 사업자	사업정지 3개월	사업폐지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	사업정지 3개월	사업폐지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않은 때 가. ~ 다. (생략)	법 제13조제1항제3호	개인위치정보 사업자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사물위치정보 사업자	사업정지 3개월	사업폐지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	사업정지 3개월	사업폐지	

강화하고 있음.

-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휴업기간이 지난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자 및 휴업·폐업신고 없이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거짓 또는 허위로 사업신고를 한 자와 유사한 수준의 제재를 가하게 되는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제제조치가 형평에 부합하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둘째, 사업 폐지·정지명령과 달리 직권 신고말소의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신고말소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직권 폐지가 사업자에게 부당한 처분이 될 우려가 있어 보임.
- 현행 위치정보법 제13조 제2항은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¹²⁾,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³⁾.

12) 제13조(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정지 등)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제14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4조제1항 관련)

I. 일반기준

5.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가중(가중하는 경우에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반면 안 제11조 제4항은 사업의 폐지·정지명령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직권 신고말소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개정안에 따른 직권 신고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는 등 상대적으로 제재의 필요성이 낮은 자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사업 정지명령 등으로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음에도 단순히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마. 위치정보서비스의 정지·삭제 등(안 제12조)

(1) 개정안 요지

-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7호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의무 확인이 필요한 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12조 제1항).
-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협조를 요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봄(제2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 확인을 위해 앱 마켓 사업자¹⁴⁾에게 상호·전자우편주소의 제공, 신고 의무의 안내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음(제3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의무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앱 마켓에서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앱 마켓사업자에게 해당 위치정보서비스를 30일의 범위에서 임시적으로 정지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제4항).
-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앱 마켓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제5항).

1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앱 마켓사업자”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고 이 사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위치정보사업 신고 의무 확인이 필요한 자) - 신고 의무 확인에 대한 협조 요구 : 1개월 내 미회신 시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 (앱 마켓사업자) - 위치정보사업 신고 의무 확인 관련 협조 요구 - 협조 요구 미회신 위치정보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서비스 정지·삭제 조치 요구

(2) 개정안 조문

개 정 안
제12조(위치정보서비스의 정지·삭제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의무 확인이 필요한 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협조를 요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 확인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앱 마켓사업자에게 상호·전자우편주소의 제공, 신고 의무의 안내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의무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앱 마켓을 통해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에게 해당 위치정보서비스를 30일의 범위 내에서 임시적으로 정지(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 정 안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앱 마켓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정지·삭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12조는 개정안에 따른 위치정보사업 신고의무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자 및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협조 요구 등을 규정함으로써 미신고 사업자를 제재하려는 취지임.
-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에 따르면 사실상 사업자가 자신이 신고의무가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바,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5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소상공인등 특례를 받은 이후 1개월이 경과한 자 포함)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안 제46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미신고 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경우 사업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아닌 공소제기한 검사 측에 있음.

- 그런데 안 제12조 제2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신고의무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자가 협조에 회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입증책임이 사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보임.
- 참고로, 현행법상 사업자가 일정 기간 협조 요청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입법례는 없음.
- 둘째, 앱 마켓에서 제공되는 위치정보서비스와 그 외 서비스 간 형평에 어긋날 우려가 있음.
- 안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같은 미신고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서비스를 앱 마켓에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가 임시 정지 또는 삭제될 수 있으나, 앱 마켓이 아닌 다른 부가통신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경우 해당 제재조치를 적용받지 않음.
- 서비스가 앱 마켓에서 제공되는지 여부는 서비스의 매개수단의 차이일 뿐 미신고 사업이라는 본질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앱 마켓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임시 정지 등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 간 형평에 어긋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앱 마켓사업자의 협조행위가 개인정보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전기

통신사업법」 등 기타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협조 의무를 규정하려는 경우 당해 협조가 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바. 과징금의 부과 등(안 제13조)

(1) 개정안 요지

- 방송통신위원회는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위치정보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6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안 제13조 제1항).

- 위치정보사업 휴업·폐업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달성 시 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제1호)
- 위치정보의 유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또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기록·보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경우(제3호)
-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제4호)

-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가 위치정보주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지명령을 대신하여 위치정보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6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제2항).

-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매출액 산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비슷한 규모의 위치정보사업자등의 회계자료·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음.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제3항).

현 행	개 정 안
-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 <u>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u> 이하 <u><신 설></u> ① 관리적·기술적 조치 미이행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기록·보존조치 미이행 ②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또는 동의 범위를 넘어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③ 이용약관에 명시·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 사업의 정지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지명령 대신 매출액의 <u>100분의 3</u> 이하의 과징금 부과 -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u>4억원</u> 이하의 과징금 부과	-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 <u>위치정보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6</u> 이하 ① <u>위치정보사업 휴업·폐업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달성 시 위치정보 파기조치 미이행</u> ② 관리적·기술적 조치 미이행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기록·보존조치 미이행 ③ 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또는 동의 범위를 넘어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④ 이용약관에 명시·고지한 범위를 넘어 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 사업의 정지가 위치정보주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지명령 대신 매출액의 <u>100분의 6</u> 이하의 과징금 부과 -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u>20억원</u> 이하의 과징금 부과

(2) 개정안 조문

개 정 안
제13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위치정보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6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 정 안

1. 제9조제4항, 제24조제1항(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기록·보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意的 범위를 넘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경우
 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가 위치정보주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명령 대신 위치정보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6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매출액 산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정보사업자등과 비슷한 규모의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개 정 안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징수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로 본다.

(3) 검토사항

- 과징금은 행정상 의무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상의 제재로, 안 제13조 제1항의 과징금은 경제적 이익 환수 성격의 과징금, 제2항의 과징금은 영업정지 대체 성격의 과징금으로 볼 수 있음.
- 그런데 경제적 이익 환수 성격의 과징금은 불법행위로 취득한 이익과 연계성이 드러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어, 일반적으로 해당 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현행 제14조 제1항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일정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함.
- 반면, 안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은 ‘위치정보사업 매출액’의 일정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치정보사업자의 매출액 중에는 위반행위와 무관한 매출액도 포함되어 있어, 전체 매출액의 일정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려는 과징금의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

○ 더욱이 개정안은 현행법과 비교할 때 과징금 산정 비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6으로, 상한액은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른 과징금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가하는 것은 아닌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안에 따른 과징금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파기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태료¹⁵⁾에 비해 과도하여 사업자의 부담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① 위반행위와 관계없는 매출액을 과징금 산정

15)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3. 제23조제1항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한 경우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1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제2항·제24조제3항·제25조제6항(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의4제1항·제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하며, ② ‘위치정보 사업 매출액’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③ 현행법에 비해 과징금의 범위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SK텔레콤 또한 ① 과징금 산정의 기준은 위반행위 및 그로 인한 부당이득과 관련성을 가져야 하므로 전체 매출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 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며, ② 과징금 비율 및 과징금 상한액 상향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유사 입법례와 비교할 때 과도하므로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또한, 안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위치정보 파기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인 경우, 파기의무 위반으로 사업자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징금의 본질적인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 KT와 LG유플러스 또한 유사 입법례와 비교할 때 과징금 비율 및 과징금 상한액이 과도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4. 위치정보의 보호(안 제3장)

가.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안 제14조)

(1) 개정안 요지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4조 제1항).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제1호)- 경찰관서의 긴급구조 관련 요청이 있는 경우(제2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3호) |
|---|

-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서는 아니 됨(제2항).
-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함(제3항).
- 누구든지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 이동성 있는 물건에 부착하여서는 아니 됨(제4항).
-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사진, 동영상 등을 전달 또는 게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위치정보의 노출 가능성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고지하거나 위치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제5항).

현 행	개 정 안
- <u>개인위치정보주체</u>의 동의 없는 개인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금지 - <u>개인위치정보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u>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행위 금지 - 위치정보수집장치 부착사실 고지 의무 <신 설> <신 설>	- <u>위치정보주체</u>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금지 - <u>위치정보사업자</u>를 속여 타인의 위치 정보를 제공받는 행위 금지 - 위치정보수집장치 부착사실 고지 의무 - 소유자·점유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 수집장치 부착 금지 - 서비스 제공자의 위치정보 노출 가능성 고지 의무 및 위치정보 노출방지 의무

(2) 개정안 조문

개 정 안
제14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30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 정 안

- ④ 누구든지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 이동성 있는 물건에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사진, 동영상 등을 전달 또는 게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위치정보의 노출 가능성을 각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고지하거나 위치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14조는 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위치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현행법과 달리 ① 소유자·점유자의 동의 없이 이동성 있는 물건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안 제14조 제4항),
 - ②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사진·동영상 등을 전달·게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이용자에게 위치정보 노출 가능성을 고지하고, 위치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를 추가하고 있음(안 제14조 제5항).
-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위치정보 수집장치 부착행위의 경우, 해당 수집장치를 통해 타인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면 현행 규정상으로도

이미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¹⁶⁾(개정안 제46조 제3호)은 (개인)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부착하는 행위는 결국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위치정보 수집장치 부착행위를 별도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사진·동영상 등을 전달·게시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무 부여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우선, 사진 촬영 시 사진 정보에 촬영 장소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경우와 같이 사진·동영상 등 정보에 위치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쉽게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사진이나 동영상의 구체적인 내용 안에 위치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이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가 게시하는 정보에 위치정보가 포함

16)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되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거나 노출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 또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정보 제작 과정과 무관한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제작 과정에서 포함된 위치정보의 노출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개정안은 안 제14조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만큼(안 제49조 제1항 제1호),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자 및 의무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안 제14조 제5항에 대하여 ①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달·게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적용 대상이 되어 과잉 규제의 우려가 있고,
②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에 위치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치할 수 있어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취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③ 이용자의 사진이나 동영상에 포함된 위치정보를 사업자가 임의로 조치하는 경우 오히려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임의로 수정·삭제한다는 점이 문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삼성전자는 안 제14조 제3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세부 내용 및 고지 방식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① 안 제14조 제3항의 경우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여진 물건’의 범위 및 수범자의 범위 등이 불분명하므로 관련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② 안 제14조 제5항의 경우 위치정보는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 자체에 같이 저장하는 정보로서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노출되지 않도록 임의로 조치할 수 없으며, 이용자에 대한 고지 방법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나.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안 제18조)

(1) 개정안 요지

-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 정보, 위치정보의 수집 방법·내용,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목적 및 보유기간 등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함(안 제18조 제1항).
-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사업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위치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단, 위치정보주체가 스스로 자신의 위치정보를 다수에게 공개하거나,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따라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위치정보를 보호의무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함(제2항).
 - 위치정보가 실시간으로 제3자에게 제공 중이라는 사실을 위치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제1호)
 - 매회 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또는 서비스의 명칭), 제공 일시 및 제공 목적을 즉시 통보(제2호)
-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최대 60일의 범위에서 모아서 통보할 수 있음(제3항).
- 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 수집 범위, 위치정보의 이용·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등의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음(제4항).

현 행	개 정 안
- <u>위치정보사업자</u>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 ① 사업자 정보, ② 개인위치정보주체 ·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행사방법, ③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④ 위치정보 수집 사실 확인자료 보유근거 · 기간, ⑤ 개인위치정보 보유목적 · 기간 등 - <u>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u>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서비스 제공 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 ① 사업자 정보, ② 개인위치정보주체 ·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행사방법, ③ 위치기반서비스 내용, ④ 위치정보 이용 · 제공사실 확인자료 보유근거 · 기간, ⑤ 개인위치정보 보유목적 · 기간, ⑥ 제3자 제공목적 · 제공받는 자 등 - <u>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u>가 개인위치정보를 <u>제3자(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자)</u>에게 제공 시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 목적을 즉시 통보 (단,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모아서 통보 가능)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일부 사항에 대한 동의 유보 가능	- <u>위치정보사업자</u>의 위치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시 위치정보주체의 동의 : ① 사업자 정보, ② 위치정보주체 ·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행사방법, ③ 위치정보 수집방법 · 내용, ④ 위치정보서비스 명칭 · 내용, ⑤ 위치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사실 확인자료 보유근거 · 기간, ⑥ 위치정보 수집 · 이용 · 제공목적 · 보유기간, ⑦ 제3자 제공목적 · 제공받는 자, ⑧ 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 방법, ⑨ 위치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 - <u>위치정보사업자</u>가 위치정보를 <u>제3자(위치정보사업자 제외)</u>에게 제공 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 ① 위치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 중임을 위치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 ② 매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 목적을 즉시 통보 (단, 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최대 60일의 범위에서 모아서 통보 가능) - 위치정보주체의 일부 사항에 대한 동의 유보 가능

(2) 개정안 조문

개 정 안

제18조(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6조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정보의 수집 방법 및 내용
4.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정보서비스별 명칭 및 내용
5.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6.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목적 및 보유기간
7. 제3자 제공목적 및 제공받는 자
8. 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9. 위치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등)
10. 그 밖에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사업자가 아닌 제3자(이하, 이 항에서 “제3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었거나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위치정보주체가 스스로 자신의 위치정보를 다수에게 공개하거나, 위치정보

개 정 안

주체가 제27조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으로서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따라 위치정보를 보호의무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치정보가 실시간으로 제3자에게 제공 중이라는 사실을 위치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

2. 매회 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또는 서비스의 명칭), 제공 일시 및 제공 목적을 즉시 통보

③ 위치정보사업자들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최대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모아서 통보할 수 있다.

④ 위치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위치정보의 이용·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의 일부와 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방법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3) 검토사항

○ 안 제18조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한 후 사전에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위치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하는 대상에 위치정보 수집 방법 및 내용, 위치정보의 파기 절차·방법 등을 추가하고, 위치정보사업자가 제3자에게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제3자에 대한 위치정보 제공 사실 표시와 관련하여, 실시간 제공 사실 표시의무의 경우 위치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만 적용됨을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안 제18조 제2항 제1호는 위치정보 제공 사실을 실시간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조치로, 위치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함.
- 따라서 위치정보가 실시간 제공되는 경우에만 제1호에 따른 조치가 적용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① 법문언만으로는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② 실시간 위치정보 공유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는 별도의 실시간 제공 사실 표시가 없더라도 해당 서비스의 특징이나 이용약관 등을 통해 실시간 제공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별도 표시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함.
- SK텔레콤은 현행법과 달리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시간 제공 사실 표시 또는 사후 통보 중 통보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개정으로 보인다는 의견임.

다만, 현행법이 ‘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통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개정안은 ‘위치정보사업자가 아닌 제3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통보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현행과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고,

하위법령을 통해 위치정보사업자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시 방식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구글코리아는 안 제18조 제1항 제4호의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정보서비스별 명칭 및 내용’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사업 영위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 명칭이 변경될 때마다 이용약관을 개정하여야 하는 등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정보서비스의 내용’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다. 위치정보사업자들의 위치정보 제공 등(안 제19조)

(1) 개정안 요지

-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위치정보사업자들은 위치정보 이용
 - 제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제공의무자”)에게 해당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됨.
-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¹⁷⁾
-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OS사업자)
-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현 행	개 정 안
- <u>개인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 위치정보사업자</u>에게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 - 요청을 받은 <u>개인위치정보사업자</u>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 거절 불가	- <u>위치정보사업자들이 제공의무자</u>에게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 - 요청을 받은 <u>제공의무자</u>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 거절 불가

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677호, 2025.7.22.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이동통신서비스”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말한다.

19. “이동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2) 개정안 조문

개 정 안
제19조(위치정보사업자등의 위치정보 제공 등)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18조제1항의 이용·제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제공의무자”라 한다.)에게 해당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공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
3.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제공의무자가 다른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현행 위치정보법 제20조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¹⁸⁾.
- 이는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18) 제20조(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①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용 또는 제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공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산업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 그런데 개정안이 현행법상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위치정보사업자’로 통합하여 규정함에 따라, 위치정보 제공의무가 있는 자를 ‘위치정보사업자’로 하는 경우 위치정보 수집이 불가능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도 제공의무자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개정안 제20조는 위치정보 제공의무가 있는 자를 현행법상 위치정보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① 이동통신사업자, ② OS 사업자, ③ 그 외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로 한정 한 것임.

○ 그런데 개정안은 사실상 위치정보사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동 조문에서만 ‘제공의무자’라는 별개의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수범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관계를 규정하려는 현행 제20조와 달리 일부 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 등)가 다른 사업자 일체(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보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OS 사업자의 경우 위치정보의 수집이 사업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치정보를 반드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집하는 것도 아니므로 OS 사업자를 제공의무자로 규정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구글코리아는 OS 사업자의 경우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위치정보사업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위치정보 제공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라. 업무위탁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제한(안 제22조)

(1) 개정안 요지

- 수탁자(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위치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항·제2항, 제16조, 제21조, 제24조 및 제25조 제4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해당 조문의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수탁자’로 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수탁자에게 다음의 의무를 부여함 ①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제15조제1항) ②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 자료의 자동 기록·보존(제15조 제2항) ③ 위치정보의 누설·변조·훼손·공개 금지(제16조) ④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달성 시 위치정보의 즉시 파기 및 복구·재생 방지조치(제24조) ⑤ 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위치정보 및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 자료의 파기(제25조 제4항) - 수탁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제21조)

(2) 개정안 조문

개 정 안
제22조(업무위탁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제한) 수탁자(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위치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 법에서 같다)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 · 제2항, 제16조, 제21조, 제24조 및 제25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수탁자”로 본다.

(3) 검토사항

- 안 제22조는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자인 ‘수탁자’ 또한 위치정보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 다만 안 제22조의 문언만으로는 수탁자가 수행하는 위치정보의 ‘처리’ 업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제외한 부가적인 업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안 제5조 제1항은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위치정보사업자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수탁자의 업무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위치정보사업자의 위탁을 받기만 하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사실상 신고 없이도 위치정보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안 제5조 제1항과 충돌할 우려가 있음.

- 한편, 안 제22조는 수탁자와 관련하여 안 제21조(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¹⁹⁾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수탁자가 타인에게 직접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치정보사업자의 지위가 없는 수탁자가 위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안 제21조는 준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클라우드서비스를 활용하여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가 수탁자로 해석된다면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의 법률관계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가령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클라우드로 처리되는 정보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고객(위치정보사업자등)이 지시한 대로 정보를 처리하므로, 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철회에 따른 위치정보의 파기 등은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19) 제21조(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치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경우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마. 분쟁의 조정 등(안 제29조)

(1) 개정안 요지

- 위치정보사업자들은 위치정보사업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29조 제1항).
- 위치정보사업자등과 이용자는 위치정보사업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통신분쟁조정위원회²⁰⁾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제2항).

현 행	개 정 안
- 위치정보사업자등 간 분쟁: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신청 - 위치정보사업자등과 이용자 간 분쟁: <u>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u>²¹⁾ 조정 신청	- 위치정보사업자등 간 분쟁: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신청 - 위치정보사업자등과 이용자 간 분쟁: <u>통신분쟁조정위원회</u> 조정 신청

20)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2.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분쟁
3.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4.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
5.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6.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분쟁

21)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설치 및 구성)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개정안 조문

개 정 안
제29조(분쟁의 조정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사업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치정보사업자등과 이용자는 위치정보사업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검토사항

- 안 제29조는 위치정보사업자등 간 또는 위치정보사업자등과 이용자 간 분쟁이 있는 경우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정 제도 등을 규정한 것임.
- 현행법은 위치정보사업자등과 이용자 간 분쟁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반면²²⁾,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2) 제28조(분쟁의 조정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치정보사업자등과 이용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그런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주체와 관계없이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인 반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전기통신업무 관련 손해배상, 이용약관, 이용계약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그 성격이 상이함.
- 또한,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현행법에 따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위치정보와 관련된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조정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분쟁조정기관을 변경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안 제4장)

가. 위치정보산업 실태조사(안 제35조)

(1) 개정안 요지

-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위치정보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함(안 제35조 제1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정보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제2항 및 제3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위치정보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

(2) 개정안 조문

개 정 안
제35조(위치정보산업 실태조사)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위치정보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개 정 안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위치정보사업자 2. 위치정보 관련 법인·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실태조사의 방법, 주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35조는 위치정보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한 ‘위치정보산업 실태조사’를 신설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은 위치정보산업 실태조사를 제4장(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에 두고 있는데, 다른 조문과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제5장(위치정보의 이용기반 조성 등)으로 이동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6. 위치정보의 이용기반 조성 등(안 제5장)

가.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안 제40조)

(1) 개정안 요지

-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제1항 제1호)
-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제2호)
-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

-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제3항 및 제4항).

현 행	개 정 안
-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 검사 - <u>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한 연 1회 이상 정기 실태점검</u>	-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 검사 - <u>위치정보사업자의 신고 등의 사항에 대한 실태점검</u>

(2) 개정안 조문

개 정 안

제4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관계 물품·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조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실태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관계 물품·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4항을 준용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40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법률 위반사항 확인 및 사업자 신고 등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하여 자료제출 및 사업장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임.
- 실태점검의 경우 현행법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²³⁾, 개정안은 모든 위치정보사업자로 대상을 확대하되 점검의 횟수·주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량에 맡기고 있음.
- 2024년 말 기준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322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포함한 전체 위치정보사업자는 2,924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실태점검 대상을 확대하되 그 방식은 재량점검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임.
- 다만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점검이 의무사항에서 재량사항으로 변경되고, 감독하여야 하는 사업자 범위가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감독 필요성이 큰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지 않은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법상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비교적 낮은 사물위치

23) 제36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실태점검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해당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정안에 따른 실태조사는 행정조사의 일종인데²⁴⁾, 행정조사의 원칙, 방법, 절차 및 실체적·절차적 한계 등에 대해서는 기본법인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행정조사기본법」과 달리 규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태점검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4)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7. 벌칙(안 제7장)

가. 벌칙(안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1) 개정안 요지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한 자	-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록) : <u>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u> - 사물위치정보사업자·개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위치정보사업자(신고) : <u>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u>
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한 자	<u>(개인위치정보의 경우만)</u>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u>(개인·사물 구분 X)</u>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위치정보사업자등 으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로서 위치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u><신 설></u>	<u>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²⁵⁾</u> ※ 위반행위 규정 신설
변경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등록·신고를 한 자	- 개인위치정보사업자 ① <u>위치정보시스템(등록)</u> : <u>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u> ② 상호·주된 사무소(신고)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사물위치정보사업자·개인	- 위치정보사업자(신고) <u>(상호·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만) 500만원 이하 과태료</u> ※ 개정안은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 신고 사항에서 제외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 ① <u>위치정보시스템(신고)</u> : <u>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u> ② 상호·주된 사무소(신고)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목적 달성 후 개인 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u>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u>	<u><삭 제></u> ※ 과징금 부과 가능
휴업·폐업 시 개인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u>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u>	<u><삭 제></u> ※ 과징금 부과 가능
위치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u>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u> ※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에도 포함	<u><삭 제></u> ※ 과징금 부과 가능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존 되도록 하지 아니한 자	<u>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u> ※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에도 포함	<u><삭 제></u> ※ 과징금 부과 가능
소유자·점유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 수집 장치를 부착한 자	<u><신 설></u>	<u>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u> ※ 위반행위 규정 신설

※ 기타 표에 명시되지 않은 벌칙은 개정안과 현행 동일

25) 유사 규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서

(2) 개정안 조문

개 정 안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한 자
2. 제18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동意的 범위를 넘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4. 제21조(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5. 제30조제8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6. 제30조제11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인정보를 제공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 정 안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자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들을 속여 타인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부착한 자
3.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제30조제7항을 위반하여 경보발송을 거부한 자

(3) 검토사항

-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라 형벌은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를 충분히

고려하여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이에 따라, 개정안에 의해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죄질에 비해 과도해지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제17조는 개인·사물위치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위치정보의 누설·변조·훼손 등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현행 제39조 제2호는 이 중 ‘개인위치정보’의 누설·변조·훼손 등에 대해서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²⁶⁾.
- 이는 사물위치정보와 달리 개인위치정보의 경우 누출될 경우 사생활 침해 등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그런데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를 위치정보로 통합하면서 사물위치정보의 누설·변조·훼손 등에 대해 처벌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물위치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도 개인위치정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안 제45조 제1호).
- 이는 사물위치정보 누설 등으로 획득하는 경제적 이익 및 이로 인한

26) 제17조(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 위치정보사업자등과 그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한 자

사회적 피해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처벌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의 누설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을
달리하거나, 현행법과 같이 사물위치정보 누설 등의 경우 처벌
규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나. 적용범위(안 제50조)

(1) 개정안 요지

- 사물위치정보만을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50조 제1항).

- 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시 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안 제9조 제3항)
- 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금지 등(안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자동 기록·보존(안 제15조 제2항)
- 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사전 동의 등(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안 제23조)
- 위치정보주체·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 사물위치정보를 이용·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다음의 신고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제2항).

-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및 상호·소재지 등 변경신고(안 제5조)
- 소상공인들의 위치정보사업 신고 특례(안 제7조)
- 위치정보사업의 양수·합병신고(안 제8조)
- 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신고(안 제9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물위치정보만을 수집·이용·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 적용 제외 - 사물위치정보를 이용·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의무 적용 제외

(2) 개정안 조문

개 정 안
제50조(적용제외) ① 이 법 제9조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은 특정한 사람의 위치정보(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한 사람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집·이용·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이용·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검토사항

-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를 ‘위치정보’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경우,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등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사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함.
- 또한,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치정보사업’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경우, 기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사물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새로운 진입규제가 도입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안 제50조는 사물위치정보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와 관련된 동법상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사물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는 동법상 신고의무를 면하여 주려는 것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적용제외의 경우 개정안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사항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제7장(벌칙)이 아닌 제1장(총칙)에 두는 것이 법체계상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과 같이 적용배제 규정을 두면서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를 통합하는 것이 현행법과 비교하여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개정안은 ①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를 ‘위치정보’로 통합하기는 하였으나 안 제50조를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의 성격과 관리방식에 불가피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고,
② 개별 조문만으로도 해당 조문이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 중 어느 것에 대한 규정인지 확인이 가능한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의 경우 본칙의 개별 조문과 제50조를 함께 확인하여야 하여 오히려 수범자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를 통합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셋째, 법률의 취지 및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제외의 범위가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가령 안 제11조 제2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직권 신고말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신고말소도 불가능하므로, 제11조 제2항 또한 안 제50조 제2항에 따른 적용배제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안 제50조 제2항의 신고의무 면제가 다른 위치정보사업이 아닌 사물위치기반서비스사업만을 하려는 자에게만 적용됨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문구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 정 안	수정의견
제50조(적용제외) ② 이 법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u>위치정보를</u> 이용·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조(적용제외) ② ----- ----- ----- <u>위치정보만을</u> ----- ----- -----.

- 방송통신위원회는 진입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에 따라 성질상 적용하기 어려운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기존에 신고 의무가 없던 사물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신고 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다만, 현행 위치정보법 제38조의3(준용 규정)²⁷⁾이 삭제됨에 따라

사물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등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 등을 위한 최소한의
 관리·감독 규정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개 정 안	방송통신위원회 수정의견
제50조(적용제외) ② 이 법 제5조, 제 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이동성 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이용·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u>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u>	제50조(적용제외) ② ----- ----- ----- ----- <u>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u> <u>다만, 이 법 제6조, 제15조 제1항·</u> <u>제3항, 제16조, 제29조 제1항, 제37조,</u> <u>제38조, 제40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u> <u>적용할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로</u> <u>본다.</u>

- SK텔레콤은 ①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위치정보주체 및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개념이 성립할 수 없고,
 ② 현행법상 사물위치정보는 실태조사의 대상이 아니며 국민의 권익
 침해와 관련성이 낮아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27) 제38조의3(준용 규정)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 제28조제1항,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제1항·제2
 항을 준용한다.

안 제28조 및 제35조를 적용배제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